

	외국인유학생및 어학연수생관리규정	규정번호	4-0-09
		제정일자	2013. 3. 1.
		개정일자	2025. 9.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 및 법무부 「출입국 관리법」 제19조제4항에 의거하여 경민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의 외국인 학생 및 어학연수생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학생’ 은 ‘외국인 유학생’ , ‘외국인 초청 교환학생’ 및 ‘외국인 어학연수생’ 으로 구분한다.
2. ‘외국인 유학생’ (이하 ‘유학생’ 이라 한다)이라 함은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본교에서 수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3. ‘외국인 초청 교환학생’ (이하 ‘교환학생’ 이라 한다)은 본교와 해외 소재 대학교와의 교류 및 협정에 의하여 본교 교육과정에 수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4. ‘외국인 어학연수생’ (이하 ‘연수생’ 이라 한다)이라 함은 경민대학교의 입학 허가를 얻어 어학연수 목적으로 본교에서 수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모든 외국인 학생 및 어학 연수생 관리업무에 적용된다.

제 2 장 유학생 입학자격 및 주관부서

제4조(입학자격) ① 외국인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유학생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1.1., 2021.9.1.)

1. 고등학교졸업(졸업예정) 이상의 학력소유자 또는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기타 법령에 의해 대학입학능력이 인정된 자
 2.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을 취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한국어능력을 갖춘 자
 3. 당해 모집요강에 기재된 지원 자격을 갖춘 자
- ② 교환학생의 경우 본교와 교류대학 간 협약에 따른다.
- ③ 어학연수과정에 지원하는 연수생은 제17조에 의한다.

제5조(입학주관부서) 유학생, 교환학생 및 연수생의 입학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유학생 선발은 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며 입학사정은 입학홍보처에서 주관한다. (개정 2017.3.1., 2018.9.1., 2019.8.1., 2021.9.1.)
2. 교환학생 선발은 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한다. (단, 학과 자체 초청 교환학생은 해당학과 및 주관부서 업무협조) (개정 2017.3.1., 2018.9.1., 2019.8.1., 2021.9.1.)
3. 연수생 선발은 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한다. (개정 2017.3.1., 2018.9.1., 2019.8.1., 2021.9.1.)

제6조(관리주관 및 지원부서) ① 유학생, 교환학생 및 연수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1. 유학생 관리주관부서 : 국제교육원 (개정 2017.3.1., 2018.9.1., 2019.8.1.)
 2. 교환학생 관리주관부서 : 국제교육원 (개정 2017.3.1., 2018.9.1., 2019.8.1.)
 3. 연수생 관리주관부서 : 국제교육원 (개정 2017.3.1., 2018.9.1., 2019.8.1.)
- ② 유학생, 교환학생 및 연수생의 관리 주관부서의 담당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

1. 외국인 학생의 본교 입학, 생활, 안전, 상담 및 출입국 업무에 대한 관리 지원
2. 외국인 학생 모집 및 홍보 지원
3. 전 항의 주관 관리부서는 외국인 학생 및 유학생의 출입국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지도 권한을 가지며, 법무부가 운영하는 유학생 정보시스템의 관리 책임을 진다.

제 3 장 유학생 관리

제7조(학사) 외국인 유학생의 수업, 성적, 학적 등 학사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본교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8조(등록금 및 장학금) ① 입학이 허가된 유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유학생은 본교 장학규정에 따라 외국인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급수 및 직전학기 성적 등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

제8조의2(한국어능력 및 졸업) ① 본교에 입학 한 외국인 유학생 중 TOPIK 2급 이하 소지자 또는 TOPIK을 취득하지 않은 학생은 입학 후 소정의 한국어 연수를 이수할 수 있다.

② 외국인 유학생 졸업은 본교 학칙 제44조(졸업)에 따른다. (개정 2021.9.1., 2025.9.1.)

제 4 장 외국인 출입국 및 유학생 정보시스템 관리

제9조(정담당자 지정) 법무부 유학생 정보시스템의 정담당자는 외국인 학생 관리주관부서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10조(출입국 자료 관리 담당자) 출입국 업무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1. 유학생 출입국 자료 관리 담당자
 - 가. 학부 학위과정 : 국제교육원 소속 직원 (개정 2017.3.1., 2018.9.1., 2019.8.1.)
 - 나. 초청 교환학생 과정 : 국제교육원 소속 직원 (개정 2017.3.1., 2018.9.1., 2019.8.1.)
2. 연수생 출입국 자료 관리 담당자 : 국제교육원 소속 직원 (개정 2017.3.1., 2018.9.1., 2019.8.1.)

제11조(출입국 자료의 전산 관리) ① 출입국 자료는 본교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산 관리한다.

② 전산 관리 대상 출입국 관리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권번호
2. 생년월일 및 외국인등록번호
3. 비자자격
4. 외국인등록만료기간 (외국인 학생 입학주관부서는 확보한 최초 출입국 자료를 학기 시작 전 까지 전산 입력을 완료하여야 하며, 정담당자는 외국인 학생 및 유학생의 출입국 관련 변동 내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시스템에 갱신하여야 한다.)

제12조(외국인 학생 및 연수생 현황 통보) 제9조의 정담당자는 법무부 유학생 정보시스템 매뉴얼에 기초하여 외국인 학생 및 연수생 현황을 정해진 기한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제13조(변동신고) 제10조의 출입국 자료 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정해진 기한 이내에 유학생 정보시스템 매뉴얼에 기초하여 변동신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1. 휴학을 한 경우
2. 제적, 자퇴, 연수중단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유학 및 연수가 종료된 경우
3. 졸업이나 수료를 한 경우
4. 사망한 경우
5. 기타의 사유로 학업이 중단되었거나 귀화 등의 사유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제 5 장 어학연수생 관리

제14조(교육내용 및 교육대상) ① 한국어와 한국문화 및 한국의 전통사상 교육과 더불어 한국전통문화 체험 등 현장교육을 한다.

② 어학 및 한국어강좌의 교육대상은 본교 재학생, 자매대학, 일반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③ 어학연수생에 대한 교육지침은 한국어능력 함양으로 희망하는 학과에 진학하여 전문지식과 기능을 습득케 함과 한국의 전통문화를 이해시켜 친한 감정 조성 및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15조(교육과정) ① 정규과정과 특별과정을 두며 필요에 따라 별도의 과정을 둘 수 있다.

② 정규과정은 수준에 따라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구분하여, 특별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연수기간) 어학연수생의 연수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단, 연수에 따른 특별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체류허가에 준해서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입학절차) ① 입학을 원하는 자는 입학전형을 거쳐 등록을 필해야 한다.

② 한국어연수과정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심의를 거쳐 국제교육원 및 관련 위원회에서 선발한다. (개정 2017.3.1., 2019.8.1.)

1. 지원서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3. 은행잔고증명서(USD 10,000이상의 국내 송금 또는 환전 증명서)
4. 삭제(2021.9.1.).
5. 기타 필요한 서류

③ 기타 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8조(수강료 및 환불) ① 납입한 수강료는 과오로 인한 것 외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비자거절로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 전형료를 제외한 100% 전액 환불한다(단, 해당 영사관에서 발행한 비자 미 발급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수수료 본인 부담).

③ 비자를 발급받고 개인사정으로 등록 취소를 신청한 경우 수강료 환불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강 전 : 전액환불
2. 신청 월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해당 월 수강료의 2/3 환불
3. 신청 월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이전 : 해당 월 수강료의 1/2 환불
4. 신청 월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환불불가

④ 위의 제3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한다.

1. 어학연수비자(D-4) 소지자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반납 후 본국 출국일을 환불 신청일로 적용한다.

- 2. 환불 신청 시 환불신청서를 작성하고 환불 받을 통장 사본, 여권 혹은 외국인 등록증(소지자)을 사무실로 제출하거나 메일로 보내야 한다.
- 3. 환불은 1~2주 정도 소요된다.
- ⑤ 수강료 납부 후 취소하거나 불합격 시 전형료를 제외하고 전액 환불한다. 또한, 연수과정 기간 중에 본교로 진학할 경우와 어학연수 과정을 중단하고 귀국하는 경우에 한해 기 납부된 수강료 중 남은 학기 해당 분을 환불한다.

제19조(출석 및 성적평가) ① 매학기 80%이상 출석을 하여야 하며 사고, 질병 등으로 결석한 경우 증명서 제출 시 출석을 인정한다.

- ② 매학기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의 부분별 점수를 합산하여 성적을 부여한다. (개정 2021.9.1.)
- ③ 교과목별 학업 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21.9.1.)

구분	배점
읽기	100
쓰기	100
말하기	100
듣기	100

제20조(수료증 발급 대상)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출석률 80% 이상 및 성적 평균 성적 6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수료증을 발급한다.

제21조(장학금) 연수과정 중 출석 및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

제22조(징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국제교육원 한국어학당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고 및 제적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1. 범죄행위자 및 품행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 2.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출석을 하지 않는 학생
- 3. 학생 지도 면에서 타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학생
- 4. 학생의 사적 다툼(폭력행위)이나 분쟁을 일으킨 학생
- 5. 학교의 비품 및 시설을 파손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학생
- 6. 교내에서 음주를 하거나, 흥기를 소지하고 교내·외에서 물의를 일으킨 학생
- 7. 교직원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한 학생
- 8. 법무부 외국인유학생 체류관리 지침 위반 행위 학생
- 9. 기타 학생의 본분을 위배한 학생

제23조(기숙사) 외국인 학생은 본교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숙사 내부 운영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6.1.1., 2021.9.1.)

제24조(입국지도) ① 표준입학허가서와 입국관련 자료를 학생에게 입학 허가를 득함과 동시에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사증 발급을 위해 국내 사전 심사가 필요한 외국인 학생 및 연수생에 대하여 사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송부 받아 외국인 유학생 관리자를 통해 국내에서 사증 발급 인정서를 교부받고 이를 지체 없이 학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오리엔테이션 개최) ① 관리주관부서는 매 학기 1회 이상 신규 외국인 학생 및 연수생 대상 오

리엔테이션을 개최하여야 한다.

② 오리엔테이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입국 관리 규정 및 준수사항
2. 본교 학사 규정 및 관련 학칙
3. 기숙사 및 학생 생활 정보
4. 유학생 보험, 위기관리 및 안전준수사항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6조(학생 상담) 담당자는 소속 외국인 학생 및 연수생의 학업중도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별도의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유학생들의 진로 설계 및 학업지도에 관하여서는 담당자 및 위원회에서 지원하며 필요 시 소속 학과 및 본교 외국인 유학생 상담교수와의 상담을 지원한다.

제27조(유학생자치활동 지원) 관리부서는 유학생 자치 활동 및 다양한 문화교류프로그램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제 6 장 생활 및 안전관리

제28조(상해보험) 연수생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 학생은 교내에서의 각종 상해 사고 시 본인이 가입한 상해 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제29조(기타보험) 유학생은 기타 질병 및 상해 사고를 대비하여 국민건강보험 및 유학생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이에 대한 세부 정보를 유학생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

제30조(보험금청구) 상해 및 의료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담당자 및 해당 업무 담당자는 사고 사실을 관련업무부서에 통보하고 제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2. 정담당자는 사고발생시 유학생 단체보험담당자에게 즉시 사실을 통보하고, 학생 상담 후 보험금 청구 대행 업무를 지원한다.

제31조(의료지원) 삭제

제32조(위기관리) 외국인 학생의 사적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본교의 학칙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교 학생징계규정에 의거 징계처분을 결정할 수 있으며, 강제 출국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 부서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 7 장 기 타

제33조(지도교수 임명) 한국어학당에 재직중인 모든 강사운영 관리를 위해 지도교수를 임명하여 강사관리 및 교육을 통해 일관된 교육과정과 교육일정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과 법무부 유학생 정보시스템 시행규정 및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외국학생지원및관리에관한규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의2(한국어능력 및 졸업)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1일 이후 졸업심사(졸업허가)를 받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는 이를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